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(조응천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3222

발의연월일: 2020. 8. 24.

발 의 자:조응천·김회재·송재호

박상혁 · 남인순 · 강선우

서영석 · 김병욱 · 김교흥

박용진 의원(10인)

제안이유

헌법 제109조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, 이에 따라 현행법 역시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 등을 열람 및 복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.

그러나 민사사건의 경우 판결 열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한 건당 1, 000원의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 제약이 있고, 종합법률정보시스템에서 검색할 수 있는 판결은 대법원 판결의 9.75%, 각급 법원 판결의 0. 19%에 불과합니다.

판결문 공개가 확대될 경우 사법절차의 투명성 강화로 재판에 대한 국민 신뢰 향상에 기여할 수 있고, 국민들이 소 제기 전 유사 판례를 확인함으로써 불필요한 소송을 줄이는 등 헌법상 공개재판주의를 실 질화하는 효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.

이에 재판부로 하여금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 공개를 용이하

게 하고 선고된 판결을 컴퓨터 등을 통해 검색 가능한 형태로 제공함으로써, 재판 공개라는 헌법적 요청을 충족시키고 판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며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.

주요내용

- 가. 누구든지 확정되지 않은 사건에 대한 판결서를 포함하여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의 열람 및 복사를 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63 조의2제1항).
- 나. 열람 및 복사가 허용된 판결서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판결서에 기재된 문자열 또는 숫자열이 검색어로 기능할 수 있도록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제공되어야 함(안 제163조의2제2항).
- 다. 법원 공무원 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판결서 열람 및 복사와 관련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함(안 제163조의 2제3항).

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민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63조의2의 제목 중 "확정 판결서"를 "판결서"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"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(「소액사건심판법」이 적용되는 사건의 판결서와 「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」 제4조 및 이 법제429조 본문에 따른 판결서는 제외한다)"를 "판결이 선고된 사건의판결서(확정되지 않은 사건에 대한 판결서를 포함하며, 「소액사건심판법」이 적용되는 사건의 판결서와 「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」제4조 및 이 법 제429조 본문에 따른 판결서는 제외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"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5항 중 "판결서의 열람 및 복사의 방법과 절차, 개인정보 보호조치의 방법과 절차"를 "판결서의 열람 및 복사의 방법과 절차"로 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열람 및 복사가 제한되지 아니한 판결서(일부만 제한된 경우도 포함한다)는 대법원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판결서에 기재된 문자열 또는 숫자열이 검색어로 기능할 수 있도록 「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기계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제공되어야 한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판결서 열람 및 복사와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. 다만 법원공무원 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혅 행 제163조의2(확정 판결서의 열람· 제163조의2(판결서의 열람·복사) 복사) ① 제162조에도 불구하 고 누구든지 판결이 확정된 사 건의 판결서(「소액사건심판 법」이 적용되는 사건의 판결 서와 「상고심절차에 관한 특 례법 1 제4조 및 이 법 제429 조 본문에 따른 판결서는 제외 한다)를 인터넷, 그 밖의 전산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법 등으로 열람 및 복사할 수 있다. 다만, 변론의 공개를 금지한 사건의 판결서로서 대 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열람 및 복사를 전부 또는 일 부 제한할 수 있다.

② 법원사무관등이나 그 밖의 법원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열 람 및 복사에 앞서 판결서에 기재된 성명 등 개인정보가 공 개되지 아니하도록 대법원규칙

개 정 아

----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 결서(확정되지 않은 사건에 대 한 판결서를 포함하며, 「소액 사건심판법」이 적용되는 사건 의 판결서와 「상고심절차에 관 한 특례법」 제4조 및 이 법 제 429조 본문에 따른 판결서는 제 외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--

② 제1항에 따라 열람 및 복사 가 제한되지 아니한 판결서(일 부만 제한된 경우도 포함한다) 는 대법원 규칙에서 정하는 바 에 따라 판결서에 기재된 문자 야 한다.

- ③ 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 호조치를 한 법원사무관등이나 그 밖의 법원공무원은 고의 또 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면 제1항에 따른 열람 및 복사와 관련하여 민사상·형사 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
- ④ (생략)
- ⑤ <u>판결서의</u> 열람 및 복사의 방법과 절차, 개인정보 보호조 치의 방법과 절차, 그 밖에 필 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.

으로 정하는 보호조치를 하여 열 또는 숫자열이 검색어로 기 능할 수 있도록 「공공데이터 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 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제공되 어야 한다.

-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판 결서 열람 및 복사와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그 배상 을 청구할 수 없다. 다만 법원 공무원 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한다.
- ④ (현행과 같음)
- ⑤ 판결서의 열람 및 복사의 방법과 절차-----